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5. 2. 18.
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2025년 2월 3일
- 나. 발 의 자: 신흥식 의원 외 4명
- 다. 회부일자: 2025년 2월 11일
- 라. 상정일자: 제25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2025. 2. 17.)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신흥식 의원)

가. 제안이유

- 영등포구가 주최·주관하거나 출연·보조하는 행사의 예산을 사전에 공개함으로써 구민의 알권리 보장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도모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공개 대상, 사항, 의무, 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7조)
- 결과의 반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강용철)

- 본 조례안의 제정 배경 및 취지를 살펴보면
 - 지역행사는 지방자치제 도입 이후 지역문화 활성화에 중요한 정책 대상으로 성장하였고, 전국 지역행사·축제의 수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884개에서

2024년 1,170개로 빠르게 증가하였음.

- 그러나 각종 행사개최를 위해 지출되는 예산에 대한 전시성, 낭비성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 60조에 따라 모든 행사·축제의 원가 회계 정보를 우리구(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음.
- 현재 시행 중인 제도는 구민들이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찾아봐야 하는 수고로움이 드는 소극적 공개이나 본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행사 홍보물에 예산을 기재하여 별도로 찾아보는 수고로움 없이 구민의 접근성을 강화한 적극적 공개의 내용을 담고 있음.

○ 주요 내용으로

- 본 「지방자치법」 제26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사무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기관의 재무 등 지방자치에 관한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리고 동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는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알리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부합함.
- 안 제2조에서 행사와 홍보물에 대한 정의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 안 제4조에서 행사 예산 공개 대상은 소요예산이 총 3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이와 관련한 타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보면 전국에서 17개(서울시 1개) 지자체에서 행사 예산 공개 조례를 두고 있고 과반수 이상의 지자체에서 3천만원 이상의 기준을 두고 있으므로 해당 기준은 타 자치단체에 비해 높다고 할 수는 없으며, 지역적 특성, 행사 빈도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한 기준으로 여겨짐.
-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행사에 소요되는 총 예산을 공개 내용으로 하며, 국·시비가 포함된 경우 재원별 금액과 비율을 명시하도록 규정함.
- 안 제7조에서는 행사 예산을 구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기 위치, 크기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홍보물의 경우에는 확인이 용이한 별도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음을 명기함.

- 안 제8조에서는 행사 예산 공개 유무를 다음연도 행사 예산 심의 시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검토 결과

- 본 조례안은 예산 3천만원 이상의 대규모 행사에 대해 전체 소요경비와 재원을 홍보물에 기재하여 사전에 공개하는 것으로 재정 취지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지방재정법」 제60조에 의거 우리구 홈페이지에 이미 게시되고 있던 행사·축제 월가회계정보는 올해 집행한 예산을 그 다음 해에 일괄 공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정보 공개에 시차가 발생하는 아쉬움이 있으나, 본 조례안이 시행된다면 행사 홍보 기간 중에 행사 예산을 공개하게 됨으로써 정보 공개의 시차가 발생하는 문제점의 보완·개선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지역경제 파급 효과, 고용 유발 효과 등 행사 축제의 효과는 수치화 할 수 없음에도 행사축제 예산이 공개됨으로써 단순 비교 대상이 되어 행사 운영의 유연성을 저해할 수도 있는 점은 고려해야 할 것임.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신홍식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72
------------	-----

발의연월일: 2025. 2. .

발 의 자: 신홍식, 최봉희, 양송이
이규선, 정선희 의원
(5인)

1. 제안이유

영등포구가 주최·주관하거나 출연·보조하는 행사의 예산을 사전에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도모하여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공개 대상, 사항, 의무, 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7조)

라. 결과의 반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제정안: “별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필요시 반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가 주최·주관하거나 출연·보조하는 행사의 예산을 사전에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사”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예산이 투입되는 축제, 문화제, 예술제, 체육대회, 경연대회, 공연을 말한다.
2. “홍보물”이란 행사를 홍보하기 위하여 제작한 광고지, 홍보 책자, 현수막,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홍보물 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행사 예산을 사전에 공개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개 대상) 행사 예산 공개는 소요되는 예산이 총 3천만 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5조(공개 사항) 이 조례에 따른 행사 예산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사에 소요되는 총 예산
2. 행사예산 중 국비 또는 시비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재원별 금액 및 그 비율

제6조(공개 의무) 행사 예산을 집행하는 사업부서는 행사 홍보물을 제작할 때

제5조의 사항을 홍보물에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구가 사업비를 출연 또는 교부한 경우에는 행사 예산을 출연·교부받아 집행하는 자가 이를 대신한다.

제7조(공개 방법) ① 행사 예산의 표기는 구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글씨체와 색상을 사용해야 한다.

② 행사 예산의 표기 위치는 홍보물 전면 우측 하단에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식별이 쉬운 위치로 변경하여 기재할 수 있다.

③ 예산 사항 표기 크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등: 면적의 100분의 5 이상

2. 여러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등: 앞표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또는 내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④ 현수막을 이용한 홍보의 경우 전면 우측 하단에 예산 사항을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우측 하단 표기가 어려운 경우 식별이 쉬운 위치로 변경할 수 있다.

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홍보물의 경우에는 행사 예산 확인이 용이하도록 별도의 방법을 이용하여 표기할 수 있다.

제8조(결과의 반영) 다음 연도에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사가 계획되어 있는 경우, 행사예산 공개 유무를 다음 연도 해당 행사 관련 예산 심의 시에 고려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